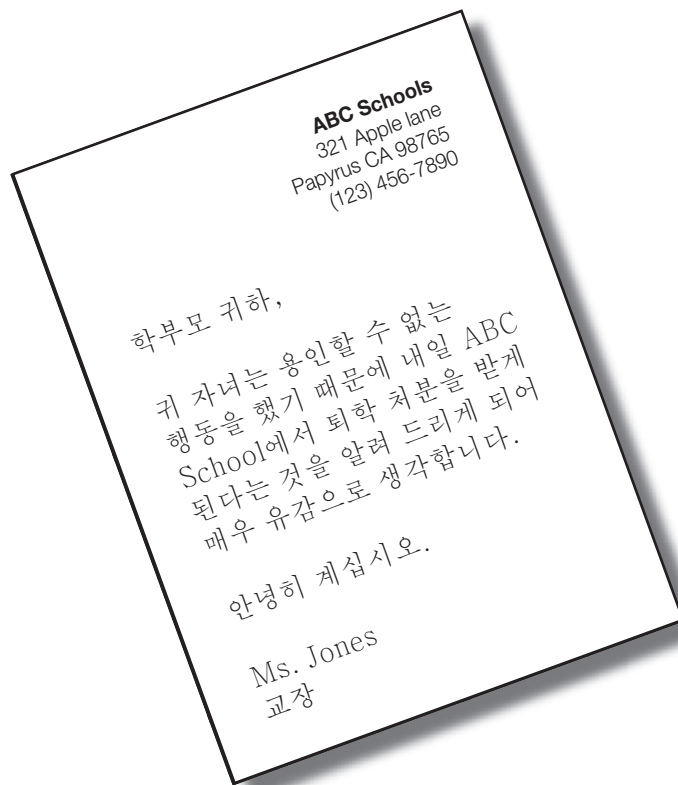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퇴학을 당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Protection & Advocacy, Inc.

무료 전화: 800.776.5746

100 Howe Ave., Suite 230-N Sacramento, CA 95825 전화: 916.488.9950 – 팩스: 916.488.9960 TTY: 800.719.5798	1330 Broadway, Suite 500 Oakland, CA 94612 전화: 510.267.1200 – 팩스: 510.267.1201 TTY: 800.649.0154
3580 Wilshire Blvd., Suite #902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427.8747 – 팩스: 213.427.8767 TTY: 800.727.4546	1111 Sixth Ave., Suite 200 San Diego, CA 92101 전화: 619.239.7861 – 팩스: 619.239.7906 TTY: 800.576.9269

간행물 #5463.03 2006년 10월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퇴학을 당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 아이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다니는 학군(“학군”)이 자녀를 퇴학시키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퇴학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장애 학생은 주 및 연방의 특수교육법에 따라 몇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퇴학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자녀의 권리와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간행물에서 다루는 주제:

- A. 퇴학과 증상 결정 심사
- B. 증상 결정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
- C. 학교 운영위원회의 퇴학 심리
- D. 이의 제기 신청
- E. 특수교육에 대한 자격이 없는 학생에 대한 퇴학

*** 자녀가 여러 번 정학을 당했으나 아직 퇴학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정학에 대한 저희 간행물, 아!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계속 정학을 당합니다!를 참조하십시오. ***

A. 퇴학과 증상 결정 심사

일반적으로, 학군이 특수교육 학생을 퇴학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퇴학 절차를 시작한 후 **10일 이내에**¹ 증상 결정 심사(manifestation determination review)를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증상 결정 심사의 목적은 퇴학 결정에 이르게 한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장애와 직접적 및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학교가 IEP를 실행하지 않은 것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 결정 심사는 “증상 결정 IEP” 또는 “퇴학 관련 긴급 IE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 결정 심사는 학부모와 다른 유자격 관련자가 포함된 IEP 팀이 실시합니다. 이 팀은 학생의 파일에 들어 있는 모든 관련 정보(학생의 IEP, 교사 관찰 사항, 학부모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 포함)를 검토해야 합니다.² 이 팀은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 1) 문제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장애와 직접적 및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 2) 문제의 행동이 학군이 IEP를 실행하지 않은 것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여부

위의 1항 또는 2항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고 문제의 행동은 학생의 장애 증상이라고 간주됩니다.³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인 경우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라고 결정되면 IEP 팀은 해당 학생에 대해 기능 행동 평가(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를 실시하고 행동 조정 계획(behavioral intervention plan)을 작성해야 합니다.⁴ 이미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IEP 팀은 학생의 행동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행동 계획을 검토 및 수정해야 합니다.⁵ 캘리포니아 주의 휴즈 빌(Hughes Bill) 규정⁶에 따라 실시한 기능 분석 평가(functional analysis assessment)는 연방 규정에 따른 기능 행동 평가 실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IEP 팀은 문제의 행동이 흥기나 마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중상을 입히지 않은 경우, 또는 학교와 학부모(들)가 달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배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⁷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 증상 때문이고 위의 2항(학군이 IEP를 실행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된다고 결정되면 학군은 즉시 결함이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⁸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 아닌 경우

IEP 팀이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학군은 퇴학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고, 학군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퇴학시킬 것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EP 팀이 문제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 아니었다고 결정했다는 것은 (1) 그러한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그러한 장애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고, (2) 그러한 행동이 학군이 IEP를 실행하지 않은 것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연속된 10일 동안 정학 또는 배치 이동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또는 그 후에 학군이 자녀에 대해 퇴학을 추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자녀는 증상 결정 심사를 하는 동안 문제의 행동이 발생한 원래의 배치로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연속된 10일 동안의 정학 또는 배치 이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녀의 행동이 흥기나 마약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중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간주되어 현재의 배치를 45 수업일 동안 다른 환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⁹ 그러나, 한 학년도에 배치 변경이나 배치 이동(정학 포함)의 누적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다른 환경에 배치를 받더라도 적절한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FAPE 요건은 학생이 일반 교과과정에서 적절하게 진도를 따라가고 IEP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학군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¹⁰

예를 들어,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여 이미 연속된 10 수업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군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자녀에 대해 퇴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군은 10일 이내에 학부모와 다른 관련 IEP 팀 구성원들이 참석하는 증상 결정 심사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예에서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지 않았고 마약이나

흥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자녀는 증상 결정 심사 회의를 기다리는 동안과 증상 결정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원래의 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IEP 팀이 증상 결정 심사 회의에서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이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결정하면 학군은 자녀를 퇴학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군이 자녀에 대해 기능 행동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행동 조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 이미 행동 조정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IEP 팀이 그 계획을 검토하여 퇴학을 고려하게 한 공격적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¹¹

위의 예에서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의 신체에 중상을 입힌 경우, 학군은 그 자녀를 최대 45 수업일 동안 다른 환경에 배치할 수 있고, 판사나 심리 담당관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자녀는 증상 결정 심사 기간 중이나 그 후에도 그 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같은 학년도에 이미 다른 건으로 3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학군은 자녀에게 이 예와 같은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연속된 10 수업일 중 8일째 되는 날부터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해야 합니다. FAPE는 정학 기간의 나머지 수업일과 다른 환경에서 받는 전체 45 수업일 동안 제공해야 합니다.

B.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통한 증상 결정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

학군이 퇴학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녀의 배치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학군은 절차상의 보호 규정과 학생의 권리에 관해서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¹²

학부모가 학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 특수교육 적법 절차 심리를 통해서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립적인 심리 담당관은 신속 적법 절차 심리에서 자녀의 행동이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장애와 직접적 및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학교가 IEP를 이행하지 않은 것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재심사합니다. 신속 심리는 학부모가 심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20 수업일 이내에 열리고, 심리 담당관은 심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 수업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¹³ 법은

신속 심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와 학부모가 만나서 이의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나, 학교와 학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¹⁴

학부모가 증상 결정이나 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제기하여 자녀가 다른 환경에 임시 배치를 받은 경우, 그 자녀는 심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배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환경에 배치된 기간이 심리가 종료되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 학부모와 학군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자녀를 원래 배치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학군이 자녀를 징계 조치의 일부로 다른 환경에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원래의 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¹⁵

학부모는 적법 절차 심리를 학군이 학군 운영 위원회(“위원회”)와 함께 퇴학 심리를 열기로 정한 날짜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제기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적법 절차 심리를 위원회에 출두하기 전에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하는 동안 학군이 퇴학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막는 명령을 심리 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심리 담당관은 이러한 신청을 처리한 후에 학군에 적법 절차 심리가 끝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퇴학 심리를 연기하라는 명령을 발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 출두할 날짜가 이미 정해진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두한 후에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 절차 심리와 퇴학에 대한 추가 정보는 PAI의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Special Educati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RR) 편람 제6장과 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¹⁶

심리 담당관은 적법 절차 심리의 결과에 따라 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은 자녀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었다고 결정하고 학교에 자녀를 원래 배치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심리 담당관은 학생의 행동이 흥기나 마약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중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학군이 그러한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학교 담당관이 배치를 이동시켰던 학생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이 흥기나 마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중상을 입힐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 담당관이 이동하기 전의 배치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¹⁷

예를 들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가 펜을 던져서 교사가 맞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군은 이러한 행동이 흥기와 관련된 교칙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자녀를 다른 배치로 이동시켰고, 증상 결정 심사에서 펜을 던지는 행동은 장애의 증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는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는 (1) 펜은 흥기가 아니고, (2) 펜을 던지는 행동은 자녀의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3) 펜을 던지는 행동은 학군이 자녀의 행동 계획과 IEP를 실행하지 않은 것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학부모는 학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했습니다. 심리 담당관이 심리에서 펜은 흥기가 아니고 자녀의 행동은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학군에 자녀를 원래 배치로 복귀시키고 자녀에 대한 학군의 퇴학 조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담당관이 행동 계획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는 경우, IEP 팀에게 회의를 열고 행동 계획을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행동이 흥기나 마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중상을 입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또는 그러한 행동이 장애의 증상이라고 IEP 팀이 결정했기 때문에) 학생이 원래 배치에 남아있는 경우에도, 심리 담당관이 그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치에 남겨두면 본인이나 다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다고 결정하면 그 학생의 배치를 최대 45 수업일까지 다른 임시 환경으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45 수업일 동안 학생에 대한 영구 배치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다른 심리를 신청하여 심리 담당관에게 학생을 45 수업일 동안 추가로 다른 임시 환경에 배치하라고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¹⁸

학부모가 신속 적법 절차 심리에서 패소했거나 심리 담당관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¹⁹

C. 학교 운영위원회의 퇴학 심리

학군이 퇴학을 추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와 자녀를 학군 운영위원회(“위원회”)가 자녀의 퇴학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회부합니다. 이 위원회의 심리는 교장이 자녀를 퇴학시키기로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열려야 하며²⁰, 위원회는 심리가 종료된 후 10 수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학부모가 서면으로 심리나 결정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²¹ 이러한 심리는 위의 나 항에서 설명한 적법 절차 심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학부모가 신속 적법 절차 심리에서 패소하고, 위원회도 자녀를 퇴학시킬 것을 추천 및 결정하더라도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²²

퇴학 추천 및 퇴학 후 재입학에 대한 많은 규정들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학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학에 대한 서면 규정 및 정책을 입수하려면 자녀가 속한 학군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양한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Cal. Ed. Code (캘리포니아 교육법) §§ 48916-48927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 이의 제기 신청

학군의 증상 결정과 퇴학 절차에 대한 각 이의 제기에 적용되는 중요한 신청 기한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부모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기한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추가로 법률 조언이나 대리를 받기를 원하시면 행정심리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OAH)에 연락하여 특수교육 옹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옹호자의 조회 리스트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Special Education Divis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263-0880
팩스: 916-263-0890

중재 및 심리 신청서(Mediation and Hearing Request) 양식은 OAH 웹사이트의 특수교육 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²³ 2006년 10월 현재, 이러한 양식들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OAH는 학부모의 권리와 절차상의 보호 규정(Parents' Rights and Procedural Safeguards)을 웹사이트에서 영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흐몽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실 수 없는 학부모들은 OAH 사무소나 각 지역의 학군으로 직접 전화하여 이러한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 특수교육에 대한 자격이 없는 학생에 대한 퇴학

학군이 자녀가 특수교육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아직 평가하지 않았으나 학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만약** 학부모가 징계 조치를 받을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학군이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러한 자녀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같은 퇴학 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음의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취한 경우, 학군은 자녀의 장애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²⁴

- 1) 학부모가 교사나 다른 교직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녀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학부모가 문맹이거나 장애가 있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 2)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요청, 또는
- 3) 교사나 다른 교직원이 특수교육 담당관이나 학군의 감독자에게 자녀의 행동이나 성적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학군이 퇴학 결정을 하기 전에 자녀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부모는 적법 절차 심리를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권리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가능한 한 빨리 신속 심리를 신청하고 학교가 자녀의 장애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위의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모든 서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군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고²⁵, 이 간행물에서 설명한 추가적인 단계의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징계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학부모가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평가는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법은 신속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속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자녀가 정학 또는 퇴학 다른 환경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결과 자녀에게 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면 학군은 그 자녀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모든 규정과 책임을 적용해야 합니다.²⁶

주: SERR 편람이나 다른 간행물들의 다른 장들을 참조하기를 원하시면 PAI 웹사이트 www.pai-ca.org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무료 전화 (800) 776-5746으로 저희 사무소에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인용 약어

§, §§	조(들)
20 U.S.C.	미국 법령 제20편
34 C.F.R.	연방 규정집 제34편
Cal. Ed. Code	캘리포니아 교육법
5 C.C.R.	캘리포니아 정집 제5편

후주

- 1 20 U.S.C. §§ 1415(k)(1)(E); 34 C.F.R. § 300.530(e)(1)
- 2 20 U.S.C. §§ 1415(k)(1)(E)(i); 34 C.F.R. § 300.530(e)(1)
- 3 20 U.S.C. §§ 1415(k)(1)(E), 1415(k)(1)(F); 34 C.F.R. § 300.530(e)(1)(i) 및 (ii)
- 4 20 U.S.C. § 1415(k)(1)(F)(i); 34 C.F.R. § 300.530(f)(1)(i)
- 5 20 U.S.C. § 1415(k)(1)(F)(ii); 34 C.F.R. § 300.530(f)(1)(ii)
- 6 Cal. Ed. Code §§ 56520 – 56525; 5 C.C.R. §§ 3001 (d), (e) 및 (f), 그리고 3052; 또한 PAI
편람,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제5장 참조
- 7 20 U.S.C. § 1415(k)(1)(F)(iii), 1415(k)(1)(G); 34 C.F.R. § 300.530(f)(2), 300.530(g)
- 8 34 C.F.R. § 300.530(e)(3)
- 9 20 U.S.C. §§ 1415(j) 및 (k)(7); 34 C.F.R. §§ 300.530(f)(2), 300.530(g)
- 10 34 C.F.R. §§ 300.530(b)(2) 및 (d), 300.536
- 11 20 U.S.C. § 1415(k)(1)(F); 34 C.F.R. § 300.530(f)
- 12 20 U.S.C. § 1415(k)(1)(H); 34 C.F.R. § 300.530(h)
- 13 20 U.S.C. §§ 1415(k)(3)(A) 및 (B), 1415(k)(4)(B); 34 C.F.R. § 300.532(c)(1) 및 (2)
- 14 34 C.F.R. § 300.532(c)(3)
- 15 20 U.S.C. §§ 1415(k)(4)(A); 34 C.F.R. § 300.533
- 16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 편람은 몇 가지 언어로 제공되며, 저희 웹사이트
www.pai-ca.org/pubs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800.776.5746로 전화하여 무료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17 20 U.S.C. §§ 1415(k)(2) 및 (3)(B); 34 C.F.R. § 300.532(b)
- 18 34 C.F.R. § 300.532(b)(3)
- 19 20 U.S.C. §§ 1415(g) 및 (i); 34 C.F.R. §§ 300.514, 300.516; Cal. Ed. Code §56505(k)
- 20 운영위원회가 매주 열리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리 기한은 40 수업일입니다.
- 21 Cal. Ed. Code § 48918(a)
- 22 Cal. Ed. Code § 48919
- 23 www.oah.dgs.ca.gov/Special+Education/Default.htm
- 24 20 U.S.C. §1415(k)(5); 34 C.F.R. §§ 300.534(a) 및 (b)
- 25 20 U.S.C. §1415(5)(D)(i); 34 C.F.R. §§ 300.534(d)(1)
- 26 20 U.S.C. §1415(5)(D)(ii); 34 C.F.R. §§ 300.534(d)(2)